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6

제출년월일 : '97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개정사유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기폐지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 명 삭제 및 실과명칭 수정, 위원수의 적정조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 코자 함.

2. 주요골자

- 시정조정위원회 수의 조정 : 16명 → 12명
 - 정보통신담당관, 사회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제외
- 기폐지 및 불필요한 대행위원회 명 삭제 : 7개 위원회
 - 재물조사위원회
 -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
 -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 생활보호위원회
 - 초지조성심의위원회
 - 농지관리위원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연간소요예산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 : 해당없음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관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각 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증 “8호”, “9호”, “10호”, “1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중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안발의시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을 조정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증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제1항중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을 “간사장 및 서기를”로 하고 제2항중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제3항중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를 “서기는 간사가”로 하고 “여 간사장을”을 “며 간사를”로 한다.

(별표)증 “기획감사”를 “기획”으로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6조”를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로 “사회진흥”을 “지역개발”로 “자방재정법 제78조 제2항”을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로 하고 “재물조사위원회”, “국무총리훈령 제67호”, “생활보호위원회”, “생활보호법 제16조”, “가정복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산업”, “초지조 성심의위원회”, “초지법 제4조”,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3항”,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제46조”, “지역경제”,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에너지소비절약시책설천지침”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당연직위원은 각국장, 보건소장, 지도 소장, 각담당관 및 각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각국장, 보건소장, 농촌 지도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 담당관, 총무과장으로.....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결정사항) (생략) 1 ~ 7 (생략) 8. 취로대책 9. 물가대책 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자격 심사	제3조(결정사항)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 12. (생략) 13.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4.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4조(회의) ①의안발의시 수요일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을 조정 개최할 수 있다. ②~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제6조(간사장)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기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면 간사를 보좌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 제11호 관련)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 제11호 관련)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감사	1. 기획예산위원회	○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6조	기획	1.	○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총무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 제23조	1.	○
	2. 세안심사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2.	○
사회진흥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제3조	지역개발	1.	○
회계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78조 제2항	1.	○
	2. 재물조사위원회	○ 국무총리훈령 제67호		2. 산재	○ 산재
사회	1. 생활보호위원회	○ 생활보호법 제16조	1. 산재	○ 산재
	2.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용자 조례 제7조		2.	○
가정복지	1.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산재	1. 산재	○ 산재
산업	1. 초지조성심의위원회	○ 초지법 제4조	산재	1. 산재	○ 산재
	2. 대여약곡결손처분심사 위원회	○ 농가대여약곡의전용에관한법률 보칙 제3항		2. 산재	○ 산재
	3.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법 제46조		3. 산재	○ 산재
지역경제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 에너지소비절약시책실천지침	산재	1. 산재	○ 산재